#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지혜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6073

발의연월일: 2024. 11. 29.

발 의 자: 박지혜·김문수·이건태

박희승・이훈기・김 윤

채현일 · 임미애 · 강준현

민형배・황명선・황정아

이광희 • 이재강 • 송재봉

최민희 의원

(169])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여금 에너지기본계획 및 에너지 관련 시책의 효과적인 수립·시행을 위하여 국내외 에너지 수급에 관한 통계를 작성·분석·관리하도록 하고, 에너지 사용량과 산업공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 통계 등을 작성·분석하여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에너지 사용량 조사시 석유·석탄·전력·도시가스 등에 대해서만 조사하여 통계를 작성·분석하고 있어, 우리나라와 같이 산업부문 에너지전환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상황에서는 태양광등 재생에너지 사용량에 대한 조사가 필수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에너지 관련 통계의 관리·공표 대상에 신·재생에너지 사용 량을 포함함으로써 우리나라 에너지 전환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 려는 것임(안 제19조제2항제1호). 법률 제 호

##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에너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제1호 중 "사용 및"을 "및 신·재생에너지 사용량과"로 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9조(에너지 관련 통계의 관리	제19조(에너지 관련 통계의 관리		
· 공표) ① (생 략)	· 공표) ① (현행과 같음)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매년	2		
다음 각 호에 따른 통계를 작			
성 · 분석하며, 그 결과를 공표			
할 수 있다.			
1. 에너지 <u>사용 및</u> 산업 공정에	1 <u>및 신·재생에너지</u>		
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	사용량과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